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020. 9.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수 4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7. 13.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 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함(안 제44조).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실시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20년 7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현행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인권기본조례') 에서는 시민의 인권1)과 관련하여 타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평가'2)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붙임-1 참고).
- 이를 근거로 서울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4.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결과 확인된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하여 인권기본조례에따라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하였음3).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인권위원회, 서울연구원, 변호사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3개 분야4) 9개 항목5)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에서 보완사항이 도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게 되었음6).

^{1) &#}x27;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 다.(인권기본조례 제2조제1호)

^{2) &#}x27;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 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를 의 미함

³⁾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인권기본조례 제17조제2항)

^{4) 1.} 차별 및 인권침해, 2.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3. 시민참여보장

^{5)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사용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권,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개정 권고내용 중에는 구제권 등 기본권보장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차별요소에 대한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조항)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구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붙임-3 참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4조 <u>(과태료)</u> 시장은	제44조 <u>(과태료 부과·징</u>	제44조 <u>(과태료 부과·징</u>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수 등)	수 등)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파한 <u>자</u> 에 대하	<u>사람</u>	<u>사람</u>	
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영 제79조제1			
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u>부과·징수</u> 등에	<u>부과·징수 및 이의</u>	<u>부과·징수 및 이의</u>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u>신청</u>	제기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4조의 제목과 본문을 개정 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뿐 아니라 '**과태료의 이의제기**'도 「질 서위반행위규제법」⁷⁾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부 오탈자 수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서윤기 의원은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안번호 164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부터 '의안번호 169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르기까지 총 53개(이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조

⁶⁾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0.4.10.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지난 2007.12.31.제정되었음(**붙임-2** 참고).

례는 총 6건임)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발의('20.7.13.)하여 소관 상임위원 회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바, 향후 위원회 소관조례 제·개정시 인권위 원회 권고사항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일	urbanth@seoul.go.kr

【붙임-1】 인권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63호, 2020.7.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1. <u>"인권"이라 함은</u>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14조(설치)

-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9. 29.>
-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 ③ (생략)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29.>
-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붙임-2】 과태료 관련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82조(과태료)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1.8.4]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11.3.2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④ <u>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46조(이의신청 방식)

- ① <u>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u>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취하)

-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의 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뒤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은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각하)

-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붙임-3】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4.10.)

연		인권영향:	평 평 기	717.110		
번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조항	권고사유
	총 계					
			계		50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행상/노점상	\rightarrow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rightarrow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부모	\rightarrow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1		소외계층 · 우범지역	\rightarrow	취약계층 · 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	인권침해	저출산	\rightarrow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9개 용어)	유모차	\rightarrow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rightarrow	상호결연 (sister 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rightarrow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기정 · 결손기족	\rightarrow	소년소년가정 한부모기정 등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2			계		5	
	편견 · 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학생	\rightarrow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rightarrow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시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서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3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권 제약	8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 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5	5 반환권 제약				8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빈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 하여 시민의 빈환권 권리보장
6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 로 인한 구제권 제약			청 절차미비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미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7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및 위촉해제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신상의 장애」문구식제 필요